

무엇이든 물어보세요~!

Question 영문으로 된 등록증이나 등록원부의 발급이 가능합니까?

Answer

- 2006년 5월 1일부터 특허등록증 및 실용신안등록증에 한하여 영문등록증이 발급이 되고 있으나 디자인등록증 및 등록원부는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 따라서 영문등록증이 필요하다면 번역 후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.

Question 등록공고란 무엇입니까?

Answer

- 등록공고란 심사를 거쳐 디자인등록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권이 설정등록 된 이후에 이루어진 디자인의 내용을 공보에 게재하여 공중에게 공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(디자인보호법 제39조 3항)
디자인심사등록출원,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모두 설정등록 후에 등록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공고제도의 취지는 등록된 디자인의 내용을 공개하여 그 권리내용을 공시하여, 타인의 중복투자를 방지함과 아울러 디자인문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,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통한 공중심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실권리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Question 디자인설정등록 후 등록공고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?

Answer

- 디자인설정등록 후 등록공고일까지 약 일주일정도 소요됩니다.

Question 등록공보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지요?

Answer

- 디자인설정등록 이후에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등록된 디자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2001년 7월 2일부터는 인터넷공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인터넷공보로 게재된 공보는 권리별 이의신청 기간동안만 열람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한국특허정보원(www.kipris.or.kr)을 통하여 검색 및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 공보열람방법은 “특허청홈페이지(www.kipo.go.kr) → 정보광장 → 인터넷공보 → 디자인” 화면에서 나타난 검색항목 등을 이용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.

출처 특허청 홈페이지

